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8년 6월 1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월 10일(일) 11시부터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6.11(월)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천영길 과장(044-203-4410)	담 당 자	변재택 사무관(044-203-4419)

산업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모습 구체화 -

- 지방정부 주도 지역혁신체계 구축·운영의 틀 마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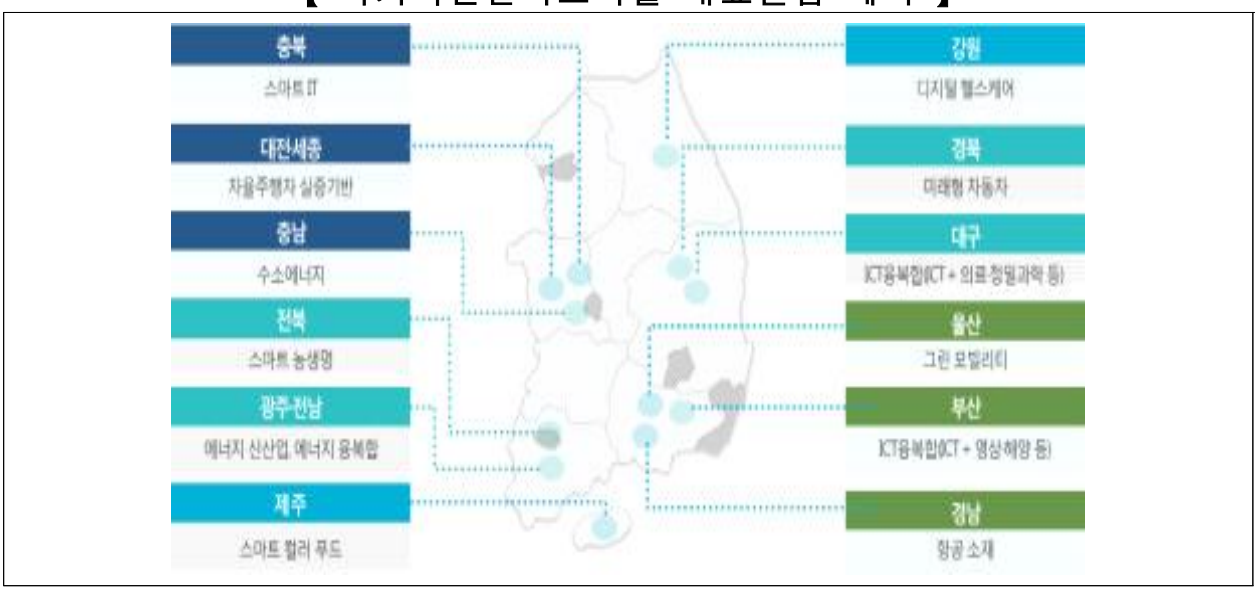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 2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6. 11. **부터 입법예고**(6. 11. ~ 7. 20., 40일)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골자로서,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과 면적·반경,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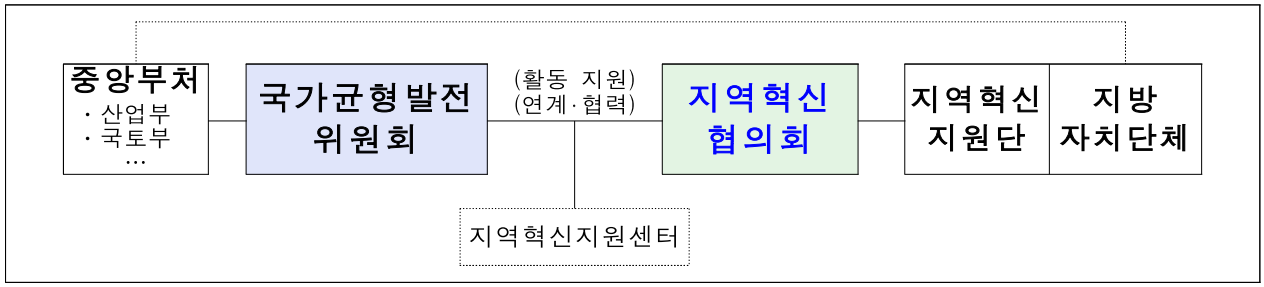
- 이에 따라 각 시·도는 하반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면적 15㎢ 내에서 지구계획과 대표산업에 대한 혁신프로젝트 지원과 선도기업(앵커기업) 유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 국가혁신클러스터별 대표산업 예시 】



② **(지역혁신체계)**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고 : 국가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방정부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지원하는 제도로서, 그간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핵심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말했다.

【 참 고 】 균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변재택 사무관(☎044-203-44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균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2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함(법률 제15489호, 2018. 3.20. 공포). 이에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 안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국가균형발전으로 용어 변경하고, 아울러 경제협력권,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광역협력권,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용어 변경함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등을 제시함 (안 제16조의2제1항)

○ 면적 및 반경, 정주여건, 기업·연구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감안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인·허가 기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인·허가 기간에 준하여 단축함 (안 제16조의5)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절차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지역 현안과의 밀접성, 관계부처 범위, 지역주민의 체감도 등으로 제시함 (안 제20조)

○ 산업부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업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지원부처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도록 함 (안 제31조제3항, 제31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장 등이 추천한 자 등 20인 이내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2조제1항 내지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사업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 예산 신청방향 등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대상에 추가하고,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제5항 내지 제8항)

○ 지역혁신지원단에서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과 지역 내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 (안 제32조의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방향을 심의할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ereloa@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9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